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23호)

◦ 2001.11.13.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 6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10. 8

다. 상 정 일 자 : 2001. 11.13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6회 임시회 제1차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가. 제안이유

-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관리,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전자우편 보급, 개인정보 보호등 인터넷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인터넷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식 정보화시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청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국내·외에 서초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구청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자료와 변동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 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주요골자

- (1)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성내용과 홈페이지 자료관리, 유료광고게재등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내지 제7조)
- (2) 사이버민원실의 설치·운영,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등 사이버민원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 (안 제8조내지 제11조)
- (3) 열린구청장실 주민참여 마당운영등 홈페이지 이용자와 의견교환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내지 13조)
- (4)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전자우편의 보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내지 제15조)
- (5) 국내·외에 서초구를 홍보할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함. (안 제16조)
- (6)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 비밀관리에 대한 조치방법과 관리원칙을 규정함. (안 제17조내지 제19조)

3.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서초구의 인터넷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련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은

- 총7장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의 제정근거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명시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구정발전 도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내용을 규정(안 제3조)
- 홈페이지 자료게시 및 삭제대상 근거 및 기준을 제시(안 제6조)

- 인터넷 유료광고 게재 근거마련(안 제7조)
- 사이버민원실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등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원칙등을 규정(안 제8조내지 제11조)
- 구민의 소리등 열린구청장실 운영 및 주민참여마당 운영(안 제12조, 제13조)
-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능률향상 및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전자우편 ID보급(안 제14조, 제15조)
- 외국어홈페이지운영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안 제17조내지 제19조)

□ 검토의견

-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제공등 이용주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제공 및 구민의소리 운영등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조에도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1. 9. 1부터 9.20까지 서초구보 및 서초구 인터넷에 입법예고한 바 민원여권과에서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총괄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변경요구가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신설 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문제등은 집행부에서 정원 조정등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동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와 공개행정을 위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문 및 답변요지

질)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게재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청 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와 이같은 일이 발생할경우 대처 방안은 ?

답)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으며 이러한 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LAN망에 대해서는 해커라든지 사이버범죄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으며 이외에 보안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음.

질) 일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민원은 몇 건 정도 인지 ?

답)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로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등 7종류가 있으나 사이버 민원실을 통한 민원접수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약10건 정도임.

질) 인터넷총괄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종전에 인터넷에 이상한 내용이 게재되어 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확인된 내용으로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인터넷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나 컨텐츠별로 달라 자료요구 관계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임.

질) 안 제7조(유료광고게제)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유치실적이 있는지와 민원처리 실적이 일일 10건 정도라고 답변한바 있는데 우리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여

산출효과가 미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현재 상업광고 유치실적은 없으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위근거법령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전자 민원 처리를 위해 프로그램등은 직원들이 만들어 비용을 투입한 것은 없으나 사이버 민원을 일반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및 추진을 실시하여 활성화 하겠음.

질)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의하면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한 총괄부서 변경에 대한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설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문제 정원 조정 등의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 민원접수 방법은 수기 접수 또는 사이버 민원접수 등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콘텐츠 자체를 본다면 민원부서인 민원여권과의 업무이고, 다만 업무증가로 인한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인력조정 등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